

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 사항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하는
NGO 통합 보고서¹

제88차 회기
(2024년 5월 13일 ~ 2024년 5월 31일)

¹ 참여단체(총 19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168개 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코디네이터 단체 연락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gensec@women21.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admin@minbyun.or.kr

목차

머리말.....	3
1.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3
2.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및 1325 이행 총괄조정 통합책무 강화.....	4
3. 공공부문 고위직 등 여성 대표성 보장.....	4
4.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배우자 강간 범죄화.....	5
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5
6.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6
7. 중소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및 가해자 징계조치 개선.....	6
8. 학교, 군대 등 공적 기관 내 성폭력 처벌 및 방지 조치 강화.....	7
9. 인신매매피해자 조기식별 및 피해자 지원 보호, 인신매매 처벌법 제정.....	7
10. <E-6-2> 비자제도 개선 및 연예공연업체 모니터링 강화.....	8
11. 인신매매피해여성 <G-1> 비자 부여.....	8
12.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8
13.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8
1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책 마련.....	9
15. 정치 영역 여성대표성 강화.....	9
16. 결혼이주여성 권리 보장.....	10
1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10
18. <학교성교육표준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10
19. <여성경제활동법> 이행.....	11
2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11
21. 단시간 여성 노동자 권리 보장.....	12
22. 돌봄 권리 확대.....	13
23.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 조치 마련.....	14
24. 성과 재생산 권리 및 LGBTI 여성의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접근권과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14
25. 부성주의 원칙 폐지.....	15

머리말

제9차 정부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기간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최근 2년간, 보고서에 담겼던 성과는 후퇴되었고 한국 여성의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성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 시도가 좌절되자, 현재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여성가족부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NGO와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매도하고², 국가권력을 오용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몇몇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만행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를 사실상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³. 이에 이 보고서는 2022년 윤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의 한국 여성 현실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었다.

1.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이미 많은 유엔인권기구들이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⁴, 제21대 국회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을 진행한 채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연구, 캠페인 등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⁵.

² 경향신문, “정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힘 빼기…‘노조 압박’ 닦은꼴”, 2023.6.4.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6042105005>

³ CEDAW 위원회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가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의결되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의 영역에서 권고 제안 문구가 초안에서 대폭 약화되었다. 당일 회의에서 김용원, 이충상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자 존엄회복이라는 보편적 여성인권 의제를 외교와 국방문제로 치환시키고, 이주가사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오히려 국적·인종 차별과 노동착취 논리를 재생산하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이 성차별 개선 관련 정책목표가 탈각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권고 제안 관련하여, 최종본에서는 “형법 개정” 문구가 삭제되는 등 기존 국회 논의와 유엔 인권기구 권고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여성단체들은 이것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자신의 존엄근거와 사명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임명한 위원은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째 혐오와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대통령(4인)과 대법원장(3인), 국회(4인)가 지명 또는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위원의 요건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 임명 당사자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이들이 인권위원으로 지명되는 문제가 있다. 2명의 위원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낙인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발언,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지난 2월 초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한 상태이다.

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018년 위원회 권고 외에도 자유권위원회(CCPR), 사회권위원회(CESCR),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아동권리위원회(CRC) 등 모든 조약 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2023년 제4차 UPR에서 총 17개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UPR 권고에 대해 정부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A/HRC/53/11/Add.1, para 8(a), The Government face difficulties in taking immediate a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⁵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임명된 인권위원들의 방해로 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 정부와 국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및 1325 이행 총괄조정 통합책무 강화

현 정부는 여성 관련 예산 및 정책 축소,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등 여성가족부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는 2023년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되었고, 2024년 현재(2024년4월15일)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심의·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닌 현 정부의 여성·성평등 정책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기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정책 관련성이 전무한 보건복지부가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인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한편, 이행 점검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1325 국가행동계획의 근본 목표인 여성의 인간안보 확대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하라
-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라

3. 공공부문 고위직 등 여성 대표성 보장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⁶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목표치는 2027년까지 13.5%로, OECD 평균인 37.1%에 비해 목표치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자발적 노력 유도 등의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차별적인 노동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

- 정부는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 등 실질적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및 이행점검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라.

⁶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별균형 달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보도자료, 2023.7.17.

<https://www.mogef.go.kr/kor/skin/doc.html?fn=3353e62bef5b4f31af6b1e8024156b17.hwp&rs=/rsfiles/202404/>

4.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배우자 강간 범죄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검토가 포함되었다가 2023년 1월 26일,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고 여당도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당일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⁷ 강간 상담 중 62.5%가 명시적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⁸이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⁹에 따르면 여성이 경험한 ‘평생 성적 폭력’의 가해자 13.5%는 배우자임에도 부부강간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정부는 CEDAW 위원회의 지난 권고를 받아들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부부강간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동의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하라.

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현 정부의 성폭력 무고 처벌 강화 기조와 더불어 검사의 무고 인지 수사가 증가¹⁰했으나 수사기관의 통념에 대한 대책은 없다. 2018년,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개정¹¹되었으나 성폭력 수사 종료 시점이 불명확한 점, 명예훼손, 위증 등 다양한 역고소에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전히 한계가 많다¹².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및 무료법률구조 제도는 보복성 역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조력인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폭력법률개정과제였던 피해자 성이력 증거채택금지조항 신설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¹³.

- 무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역고소 피해자 및 피해자 조력인에 대하여 법률 지원의 예산과 범위를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라
-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을 성범죄 양형에 반영하라
- 성폭력특별법에 성폭력 피해자의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라

⁷ KBS, 9시간 만에 입장 바꾼 여가부...‘비동의 간음죄’ 논쟁, 왜? 2023.1.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1665>

⁸ 한겨레신문,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성폭력상담소 119곳 접수 사건 4765건 분석, 2023.7.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1677.html>

⁹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73

¹⁰ 검찰발표자료,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범 엄정 대응」, 2023.02.14.

¹¹ 2018년,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2018.5.28.,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1546651600875101>

¹²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키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토론회 자료집

¹³ 한겨레, [단독] 법무부, 여가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반대, 2023.02.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9253.html>

6.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¹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¹⁵의 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의 이미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드러난 이미지로 규정되어 가슴이나 성기 노출이 아닌 경우 법적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고¹⁶,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피해지원체계에서 탈락되고 있다¹⁷.

- 다양한 사이버공간 내 성적인 괴롭힘에 대해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입법 대안을 마련하라.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7. 중소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및 가해자 징계조치 개선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대표인 경우 본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¹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2년 상담통계에서 드러난 피해 유형은 ‘기타’와 ‘성적 괴롭힘’이 각각 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불법촬영이 19%였다. 예컨대 동의 없는 성행위 소리·성적 대화 녹음,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칭·성적 허위/사실 유포, 해킹 등으로 신분증·학력·직장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성적으로 이용, 성적 속성이 없는 사이버스토킹 등 미처 유형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기타’ ‘성적 괴롭힘’에 포진해있다. 이 분류에 속하는 가해 행위는 지금의 성폭력처벌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 등의 조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적용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발생에 이용된 경험자의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개인적 위험 관리로 초점이 이동되는 실정이다. (신성연이,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사이버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대 폭력 대응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63쪽~64쪽, 2023)

¹⁵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¹⁶ 기술매개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과 주요 개념인 “성적 수치심”의 해석에서 법원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념을 그대로 둔 채 전적으로 해석에 맡기게 되면 안정적 법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적 수치심”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를 입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실무에서는 “음란성”과 “성적 수치심” 개념이 성폭력 피해를 부인하도록 하고, 기술매개 성폭력의 ‘젠더에 기반한 성적 폭력’이라는 성질을 반영하기보다는 사회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

(김정혜·김애라·박보람·홍남희·정수연,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116쪽)

¹⁷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삭제지원 안내’ 중, ‘Q. 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delete_consulting

-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예산을 복원하고, 성희롱 가해자가 법인대표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8. 학교, 군대 등 공적 기관 내 성폭력 처벌 및 방지 조치 강화

미투운동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특별신고센터 운영, 재발방지 현장점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점검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의 경우, 교수의 권력으로 인해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¹⁸ 군대의 경우 성폭력 ‘엄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은 오히려 일어나기 어렵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¹⁹에서 여군 32.1%, 남군 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을 응답했다.

- 군대 내 성희롱, 성차별 신고 및 심의, 징계 처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방지를 위한 자원을 확대하라
- 초·중고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라
- 대학 내 학위, 구직과정의 학생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

9. 인신매매피해자 조기식별 및 피해자 지원 보호, 인신매매 처벌법 제정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지원단체에 연계하는 건수가 거의 없고, 피해자 식별지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하여 식별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신매매처벌법의 부재로 인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 조사 건수가 낮다. 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의료, 법률 등 피해자 지원 정책 체계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 인신매매 피해 현장 이해와 식별지표 사용을 위한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라.
- 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에 맞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라.
- 인신매매피해자 권익옹호기관 및 의료, 법률 등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

¹⁸ 여성신문, 교수 성폭력으로 얼룩진 서울대... 사건은 왜 계속 발생하나, 2023.03.0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407>

한겨레21, 대학교수는 피해자 괴롭힘도 ‘수준급’, 2023.10.1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522.html

경향신문, ㉔계속되는 대학 미투, 이제는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2020.03.06.,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3061400001#c2b>

¹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실태조사(2019)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5098&searchCategory=&page=2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10. <E-6-2> 비자제도 개선 및 연예공연업체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E-6-2 비자 제도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E-6-2 비자 소지 이주민의 체류연장 또는 허가 시 매뉴얼에 따라 비자 소지자가 스스로 작성한 피해자 식별지표만을 받고 있다. 식별지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비영어권 이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작성 시 업주나 기획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상황에 기반해 작성하기 어렵다.

- 피해자 식별지표의 접근성 향상 조치, 공무원 또는 전문 상담원이 직접 질문하는 방식 등을 통한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방식 개선 등 E-6-2 비자 소지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입하라.

11. 인신매매피해여성 <G-1> 비자 부여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들이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분류되어 <G-1> 비자를 부여받기보다는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되어 강제출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소송, 수사, 재판 등) 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피해 여성에게 G-1 비자 발급 허가가 되고, 그 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피해여성의 경우, 쉼터 입소, 의료, 치료회복 등의 목적을 위한 G-1 비자 취득이 불가능하다.

-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을 성매매행위자가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분류하고 G-1 비자를 부여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쉼터입소, 치료 등 성착취 피해 회복 목적을 위한 G-1 비자 체류자격을 허가하라.

12.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 행위로 규정하여 성매매 알선 및 성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강요된 성매매를 입증하는 피해자에 한해서만 처벌을 면해주고 있는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보장하라.

13.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소한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할 뿐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지원 단체를 공격하는 일도 심각하게 확장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존중해 ‘2015 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가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을 반영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피해 사실 부정과 명예훼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라.

1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책 마련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122명의 미군위안부 원고가 2014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리의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을 확정하였다.

- UNSCR1325 국가행동계획에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전시 성폭력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문제를 적시하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이후 진행될 미국을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15. 정치 영역 여성대표성 강화

제22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20%, 그 중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1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할당제를 강제한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52%에 달하며 주요한 정치 진출 통로이나,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가 300석 중 46석으로 그 비율이 매우 적고,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²⁰. 개정된 여성추천보조금 제도²¹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²²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시킨 것이다.

- 정부와 국회는 여성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의석수를 확대하라. 현재 권고조항인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지역구 여성후보 30%이상 추천)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라. 또한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²⁰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 전체 299석 중 54석(2012년) → 전체 300석 중 47석(2016년) → 전체 300석 중 46석(2024년)

²¹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²²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기존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20%이상~30%미만, 10%이상~20%미만)를 나누고, 전자를 충족시키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만 후자를 충족하는 정당들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개정된 안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없애고,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한 모든 정당들에게 차등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다 강제성을 갖도록 개정하라.

16. 결혼이주여성 권리 보장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입국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귀화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기간이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체류 안정성이 낮다. 다양한 결혼이민비자 중²³ F-6-1 비자 소지자는 「국적법」에 따른 종합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유자녀일 때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배우자 사망·이혼한 경우, 무자녀 외국인 배우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체류연장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되었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조력 없이 체류연장이 어렵고, 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체류 및 귀화 정책을 폐지하라.
-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체류연장과 귀화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라.

1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2023년 개정된 출생통보제도²⁴는 한국 국적자의 출생 등록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은 출신국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부모의 본국에 가야만 출생등록만 할 수 있어, 박해의 주체인 출신국 공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난민, 인도적 체류 아동, 한국에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의 자녀 등이 어디에도 출생등록을 못 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해 공감대를 마련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 밝혔지만, 2021년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 논의는 알려진 바 없으며, 21대 국회 임기를 1달여 앞둔 현 시점에서 법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 당사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 국적,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18. <학교성교육표준안>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의 이전 권고²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2월 학교성교육표준안 개정절차를 중단하였고, 학교에서는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강화한 기존 표준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²⁶ 학교 현장의 성교육은

²³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비자는 F-6-1 법률혼 부부동거, F-6-2 혼인관계 단절 후 자녀 양육, F-6-3 배우자 사망, 배우자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나눈다.

²⁴ 2023년 6월, 감사원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6천여 명임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이 중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약 4천여 명을 제외한 2,12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²⁵ CEDAW/C/KOR/CO/8, para. 37.

²⁶ 한국일보,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2019.07.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보수성향의 종교단체가 장악하여 순결교육,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교육으로 이루어져 비판을 받고 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학교 성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²⁸ 나아가 정부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고, 해당 용어가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²⁹

- 정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라.
- 정부는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시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교성교육표준안을 개편 및 보급하라.

19. <여성경제활동법> 이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포괄적 법률이나, 정부는 기존에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본 법의 주무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법에 기반한 포괄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관련이 깊다.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마련하라.

2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겨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 수립해야 하는 제7차 기본계획(2023-2027)을 현재(2024년 4월 15일 기준)까지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의해 구제받는 여성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따른 구제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²⁷ 세계일보, “혼전 순결 강조 종교단체 청소년지원센터 수탁 철회하라”, 2022.12.19.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9514571>

²⁸ 프레시안, “성평등 교육 지금도 처참한데... ‘성 인권 교육’ 없애겠다는 여가부”, 2023.09.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0817040405474>

²⁹ 경향신문, “성소수자’ 지운 새 교육과정에 반발 확산... ‘졸속 의견수렴’ 논란도 계속”, 2022.11.14.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1141520001>

21. 단시간 여성 노동자 권리 보장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 및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³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2년 이상 고용 시 직접고용 의무대상에서조차 배제하여 무한정 비정규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주당 14.5시간의 고용계약을 늘려가고 있다. 2021년 기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노동자 중 무려 8.3%가 초단시간 노동자이다. 게다가 기존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실업급여 산정 시 '1일 4시간'을 하한선으로 삼아 그보다 짧은 시간

³⁰ 법령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 제한 내용

- 근로기준법 18조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25437&lang=ENG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0203&lang=ENG

- 고용보험법 10조 1항의 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4176&lang=ENG

- 국민연금법 시행령 2조의 4호 :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3510&lang=EN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 1,2호 :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3233&lang=ENG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 :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7035&lang=ENG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3항 :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2108&lang=ENG

일하는 노동자도 4시간은 일한 것으로 간주했던 규정을 폐기하여, 취약노동자들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¹.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 실업급여 지급 하한 기준을 기존 4시간으로 복원하라.

22. 돌봄 권리 확대

돌봄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150시간이 더 길다³². 한편, 정부는 현재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까지만 가능한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³³.

2022년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30.2%, 이중 남성은 27.1%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은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여, 휴직한 노동자 중 남성의 70.1%, 여성의 60.0%는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다³⁴. 중소기업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돌봄 노동자가 부족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홍콩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주노동자에게 가사, 돌봄노동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론을 만들고 있다³⁵.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및 초과근무 가능 시간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라
- 중소기업사업장 및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등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 이주 가사, 돌봄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정책 방향을 폐기하라

³¹ 12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깎인다 / 조세일보, 2023. 12. 10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05002>

³² 연합뉴스,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2024.3.3.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2026300530>

³³ 한겨레,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 나라로... ‘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2023.3.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288.html?_ga=2.88817243.1737184506.1712665973-1477776135.16568208

54

³⁴ MBC, “육아휴직 14% 증가·남성 늘었지만 대기업 집중”, 2023.12.20.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54938_36170.html

³⁵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차등 임금’ 한은 보고서에 분노... ‘인간이 아니라 노예 취급’”, 2024.3.1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31426011>

23.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후속 조치 마련

2021.1.1.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임신중절 허용 시기와 요건을 명시³⁶함으로써 임신중지 권리를 다시 제한하고 있다³⁷.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권고³⁸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형법 개정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개정도 방해하고 있다³⁹. WHO가 임신중지 가이드⁴⁰를 통해 강조한 대로 임신중지는 완전한 비범죄화여야 하며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이 필요하다.

-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및 임신중지 시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라

24. 성과 재생산 권리 및 LBTI 여성의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접근권과 비자발적 의료개입을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위원회의 이전 권고(41단락)에 불구하고 한국의 재생산 건강 정책은 임신 출산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교차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있지 않다⁴¹. 트랜스 여성은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의료적 개입

³⁶ 2020.11.25. 정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①제26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70조 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6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 등 범죄행위로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것

나.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지났을 것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숙고(熟考)한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³⁷ 경향신문, 낙태죄 정부 개정안, 여성들 ‘모욕감’ 느꼈다, 2020.10.21.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0211622001>

³⁸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2020.12.31.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615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B%82%99%ED%83%9C%EC%A3%84&menuLevel=3&menuNo=91>

³⁹ 경향신문, “모자보건법 개정안 가로막는 보건복지부 규탄”...4년 넘게 진척 없는 ‘낙태죄 대체법안’, 2023.12.1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51544001>

⁴⁰ WHO, Abortion Care Guideline, <https://iris.who.int/handle/10665/349316>

⁴¹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인공·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의 시술 대상을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한정하는 자의적 기준으로 인권위의 지침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혹은 외과적 수술이 강제되어 있다. 한편 트랜지션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있다.

- **지난 권고(41단락)에 이어, 여성의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보건 법률 정책이 출산력에만 집중하지 않고 경제수준, 장애, 이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교차차별을 받는 모든 여성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라. 트랜스 성별정정 요건에 원치않는 의료적 개입을 제외하고, 필요한 의료적 조치는 건강보험에 포함하라**

25. 부성주의 원칙 폐지

정부는 부성주의 원칙 폐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국가보고서에 관련 정책계획⁴²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⁴³. 또한 법무부는 부성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기각 의견을 제출⁴⁴하기도 했다.

- **정부는 민법 제781조를 개정하는 등 부성주의 원칙을 폐지하라.**

⁴²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1~2025) 등에 부성주의 원칙 폐지와 민법 781조 제1항 개정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⁴³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성주의 폐지가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2022 법무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박주민 의원실 제공)

⁴⁴ 연합뉴스, '아빠 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니다", 2022.11.28.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147500004?input=1195m>